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6

2012년 10월 5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로서

○ 주요 위탁사무는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관리·운영, 상담 및 일시보호, 상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각종 교육 등이며,

○ 위탁기간은 3년(2013. 1. 1~2015. 12. 31)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위탁사무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드롭인 센터)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1]에 의거해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시장이 상기 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관리·운영
- 상담 및 일시보호, 상담공간 운영, 숙식제공,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성교육, 건강교육 등

2)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은,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경우 가정복귀나 시설입소 보다 독립 및 자립의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시보호(24시간 이내) 및 숙식제공·건강/의료 등 각종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여 초기 위기 상황 개입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된 시설로서, 지난 2012년 9월 7일 개소하였음.

---

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에 상기 시설은 지난 제23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시('12년 4월), 민간위탁 신규추진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안(원안가결)이며, 금번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여부를 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상기 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상담과 온라인 아웃리치, 의료지원,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대상자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상기 시설은 지난 제237회 시의회 동의시, 시설의 시범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9개월('12. 6월 ~ '13. 2월까지)로 추진하였음. 그런데 금번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3년간), 전회기 제출 위탁기관과의 2개월의 중복기간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편의상 위탁기간만료 기간을 연말로 일괄적으로 맞추려는 의도로 이해되어짐.

- 그러나 이 경우 현행 수탁기관과의 계약단축에 따른 별도의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계약단축 과정에서 특정 조건 없이 민간기관과의 수평적 상호협력에 따른 협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046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지원시설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394번지 1층
○ 시설규모 : 85.8㎡
○ 이용대상 : 서울시 내(內)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 탁 명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관리·운영
- 상담 및 일시보호, 상담공간 운영, 숙식제공,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성교육, 건강교육 등

○ 소요예산 : 330,000천원(2013년) ※ 2012년 325,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및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5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 - 14564, 2012. 9. 17)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2. 8. 8 - 2012. 12. 31.(5개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회유지재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의 경우 전문적 인력 확보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여 市 직영시 인원보충이 불가피하며,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제1,2항(여성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사항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14564, 2012. 9. 17)